

WEMADE

부패방지정책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일자	제.개정 내용	작성자
1.0	24.05.30	제정	ESG 팀

목 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대상]

제 3 조 [기본 원칙]

제 4 조 [금품 등 제공 및 부정한 청탁 금지]

제 5 조 [기부 및 후원]

제 6 조 [장부와 기록관리]

제 7 조 [부패방지 관리 체계의 운영]

제 8 조 [신고 및 보복 금지]

제 9 조 [위반에 대한 처벌]

부패방지정책

제정 2024.05.30

제 1 조 (목적)

부패방지정책 (이하 "정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위메이드(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패행위 발생을 방지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 회사 및 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요 투자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본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 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본 원칙)

- 국내·외 회사 구성원은 국내외 모든 부패방지법과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지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수주 등 모든 사업 과정에서 본 정책을 준수하여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성원이 급박한 기본권 침해상태에 처하여 구성원 본인의 안전을 우선 시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빠른 시일내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금품 등 제공 및 부정한 청탁 금지)

- 구성원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제안 또는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 국내·외 공직자가 속한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에 의해 금품 등 제공 또는 수취가 금지된 경우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동일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회상규 상 위배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사는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이른바 급행료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단, 구성원은 현지 문화 특성 또는 현지 법령상 급행료 지급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현지 공직자로부터 급행료 지급 요청을 받는 경우, 사전에 직속 직책자(임원 이상)의 서면 승인을 득하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구성원은 국내 공직자에 대해서는 금품 등 제공 금지에 대한 준수사항 이외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제 6 조(장부와 기록관리)

- ① 회사는 모든 거래를 반영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장부 및 기록을 관리하고 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구성원은 관련 법, 사규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회계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거나 위·변조, 조작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부패방지 관리 체계의 운영)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 실천과 본 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실행한다.
 1. 본 정책의 검토·제정·개정·폐지
 2.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3. 국내·외 부패방지법, 본 정책에 대한 해석 및 자문 제공
 4. 구성원 반부패 관련 서약 및 교육 실시
 5. 제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부패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7. 본 정책 위반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 ② 구성원은 국내·외 반부패법령 준수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고 및 보복 금지)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그룹웨어 및 홈페이지 제보코너, 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자 신분 노출, 제보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제보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 9 조 (위반에 대한 처벌)

- ① 임직원이 본 정책 · 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는 구성원의 부패행위가 국내·외 부패방지 법령 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법집행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